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14. 03. 28. 규칙 제1340호
1차 개정 2014. 04. 28. 규칙 제1344호
2차 개정 2015. 05. 19. 규칙 제1378호
3차 개정 2015. 11. 03. 규칙 제1398호
전부개정 2019. 08. 28. 규칙 제1491호
1차 개정 2019. 10. 14. 규칙 제14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2조(교원위원) 교원위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직원위원) ① 직원위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및 전국대학노조 청주교대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2명, 전국대학노조 청주교대지부장이 1명을 추천한다.

③ 선정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직원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학생위원)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단,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 대표 기구의 장이 추천한다.

제5조(외부인사 위원) 졸업생 위원은 총동문회장이 추천하고, 외부위원은 총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하여 선정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신고 등을 한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증명자료, 그 밖의 후보자의 신상·경력·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선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이의제기·신고 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에 취임한 때에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등

제1절 교원 선거권 등

제7조(교원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교원선거인의 투표결과는 선정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된 비율에 따른다.

② 투표결과 반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정식 예시>

교원 총 선거인수 70명, 유효투표수가 60명, 후보자 A가 50표를 획득했다면 A후보의 환산득표율은 50표(득표수)/60명(유효투표수)*80(반영비율)=66.67(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2절 직원 선거권 등

제8조(직원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직원선거인의 투표결과는 규정선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된 비율에 따른다.

② 투표결과 반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정식 예시>

직원 총 선거인수 80명, 유효투표수가 75명, 후보자 A가 30표를 획득했다면 A후보의 환산득표율은 30표(득표수)/75명(유효투표수)*13(반영비율)=5.20(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3절 학생 선거권 등

제9조(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는 선정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된 비율에 따른다.

② 투표결과 반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정식 예시>

학생 선거인수가 1,200명, 유효표수가 900명, 후보자 A가 290표를 획득했다면 A후보의 환산득표율은 290표(득표수)/900명(유효투표수)*7(반영비율)=2.26(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4절 선거인명부 작성

제10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원 및 조교의 선거인명부는 교무처, 학생선거인 명부는 학생처, 직원선거인 명부는 사무국에서 작성한다.

제4장 선거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 등

제11조(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①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후보자의 인영 등은 관할선관위에서 정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른다.

②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후보자는 필요시 추천위원회에 필요한 수량의 추천서 교부를 요청하되([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대상자 인적사항”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추천인 1명당 추천서 1장을 받아야한다.

③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재직증명서)·제4호(보직사퇴서)는 본교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 및 그 서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위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12조(후보자의 추천위원회 제출 서류) 선정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른다.

1.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2. 공정행위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3. 공약준수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4. 대학발전 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선거인명부) 선정규정 제18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정정 등의 사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르며, 온라인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은 관할선관위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다.

제14조(선거공보·선거벽보의 제출·정정) 선정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선거공보 확인은 [별지 제12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 및 선정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벽보 제출은 [별지 제11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정정 요청 및 선정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13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5조(이의신청서 등) ① 선정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선정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 정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선정규정 제38조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6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공고 등) 선정규정 제36조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공고는 [별지 제17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38조제3항·제39조제5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무효·취소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8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공개토론회) ① 선정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학내의 기관, 단체, 선거인은 임의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그 밖의 집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이 토론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공보) ① 선정규정 제22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면수: 12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② 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제3항에 따른 예상 선거인수에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

·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필요한 세부 사항, 선거공보의 확인일자 및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안) 등의 사항을 공지하며,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작성 및 제출 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을 통보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을 공지한다.

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교원, 직원, 학생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⑥ 선정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신청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정규정 제22조제5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공보의 제출·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소형인쇄물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소형인쇄물 1종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이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형인쇄물은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라 16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2. 유형: 인쇄물
3. 제출부수: 30부

④ 소형인쇄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실대로 게재되어야 한다.

1.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사진, 성명, 연령)
2.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교육 및 연구 업적
3. 후보자의 상훈 수여 및 징계 처분 사항
4. 대학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소견
5. 대학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⑤ 소형인쇄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 기준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고한다.

⑥ 제출된 소형인쇄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제출기한까지 이를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소형인쇄물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형인쇄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20조(소형인쇄물 등 배부) ① 선정규정 제27조에 의거 소형인쇄물을 배부하는 우편발송의 방법에는 대학우편함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발송 방법 및 시기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는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발송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형인쇄물 등을 발송,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1조(영상 홍보물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영상홍보물 1종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가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 홍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5분 이내로 제작하여야 한다.

1. 길이 720픽셀 및 너비 1,280픽셀 이내 크기로 HD급 이하의 화질을 갖춘 화면
2. 단색으로 처리된 배경 화면
3. 후보자만 출연 가능

④ 영상 홍보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실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교육 및 연구 업적
2. 대학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소견

3. 대학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⑤ 영상 홍보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 기준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고한다.

⑥ 제출된 영상 홍보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⑦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영상 홍보물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⑧ 영상홍보물은 규정 제20조제2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후보자의 영상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제22조(선거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① 총장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선정규정 제25조 제2항의 선거홈페이지를 학내 정보통신망에 개설·운영한다.

② 선거홈페이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와 총장이 협의하되, 다음 각 호의 구성과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1. 선거관련 정보 제공: 관할선관위, 추천위원회, 총장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고,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선거에 관한 법령·규정을 안내하는 기능

2. 후보자정보 제공: 선거후보자의 경력·학력·연구실적 등에 관한 정보, 발전계획서, 선거공보를 게시하여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3. 후보자의 정책 홍보: 각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공약 등을 글, 도화,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인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

4. 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신고 등을 접수하는 기능

5. 공개토론회의 실행중계 또는 그 녹화영상물을 게시하는 기능

③ 후보자가 선정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는 후보자의 주요경력 과 업적, 총장관, 대학관, 대학발전방향 등에 대한 견해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설회·찬조연설·좌담회·토론회 등의 성격을 띠거나 그러한 성격을 갖는 부분은 담을 수 없다.

④ 선거인이 선정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 관해서는 제3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23조(선거벽보) ① 선정규정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게시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게시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게시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게시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게시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6장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제24조(동순위자 중의 선정방법) 선정규정 제35조제3항에서 예정하는 사정으로서, 득표순위가 같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어서, 선정규정 제35조제1항의 제1차투표의 차순위득표자가 1인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규정 제35조제2항의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이 결선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를 정한다.

1. 제1차투표(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에서 득표수가 같은 차순위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본교에서 전임 교원으로 근속한 기간이 가장 긴 후보자(이하 “장기근속자”라 한다)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 2인이 정해지는 결선투표의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득표순위의 후보자들의 제1차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제1차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때에는 장기근속 순위에 따라 정한다.

제25조 <삭제 2019.10.14.>

제7장 보칙

제26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서류 양식 등 포함)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부칙(2019. 8. 28. 규정 제1491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부칙(2019. 10. 14. 규정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